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9월 10일  
의회 운영 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9월 1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원이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,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의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보고받음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 등을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29조제4항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-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발언과 관련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이 부재하여, 처리결과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파악하기 어려움.
- 따라서,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답변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) 주요 내용

-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또는 회의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 등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(안 제29조 제4항)

#### 3) 검토 의견

-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책형성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집행 등에 대해 감시·감독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관련 규칙상에 명문화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,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정 및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, 본 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략

**5. 토론요지** : 생략

**6. 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음